

24.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주택 토지〉

▲ 임대주택사업자에 제한적 토지수용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9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잔여토지 수용 가능.

▲ 미분양아파트 임대전환

분양목적으로 지은 아파트라도 준공일까지 미분양된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 임대주택 우선매각의무 면제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종료후 매각할때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매각의무 면제.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이를 주요 시설의 보수에 사용.

▲ 산업단지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등 공단개발때 부과되는 8종의 부담금 면제.

▲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국가산업단지로 제한되던 공단기반시설 국고지원대상을 1백만m² 이상 지방산업단지까지 확대.

▲ 산업단지관리비 폐지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던 산업단지관리비(분양가의 2%) 폐지.

▲ 종합토지세 감면대상확대

산업단지개발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만 적용되던 종토세감면이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자

에게도 적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확대

승마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썰매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

▲개발부담금 경감

민간이 산지 70% 이상이 포함된 곳에 택지 유통시설을 개발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할때 개발부담금 50% 감면, 수도권밖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거나 중소기업용 공단을 만들때도 개발부담금 50% 감면.

▲건설업면허제도 개선

해마다 제한된 기간내에 1회에 한해 발급되던 건설업면허 수시 발급.

▲시공능력공시제 도입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상한선을 정하는 도급한도액제 폐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기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시공능력공시제를 7월부터 시행.

▲건설공사현장 실명제도입

하도급 위탁 품떼기 등의 형태로 사실상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를 발주기관에 신고도록 7월부터 이들을 전문건설업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책임도 부과.

▲지하수개발 허가제전환

지하수개발 및 이용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4개 광역상수도 개통

전주·익산광역상수도, 부안댐계통 광역상수도,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낙동강 2단계 광역상수도 97년말 개통.

▲3개 공업용수도 개통

광양공업용수도, 광양 2단계 공업용수도, 녹산공업용수도 97년말 개통.

▲설계심의제도 개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맡던 대형공사집행 기본계획서와 턴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심의를 지방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로 대폭 이관.

▲부실설계 손해보증제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손해보증제 도입.

▲안전 및 품질관리비 의무화

발주자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 철강구조물 공장인증제

철강재구조물 품질관리를 위해 철강구조물은 반드시 일정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제작도록 하는 공장인증제 도입.

〈세 제〉

▲ 납세자 권리현장제정

7월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정, 전사업자에 일괄교부.

▲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유출을 금지. 납세자가 권리의 내용이나 그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

▲ 체납자료제공

고액상습체납자나 고액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제공.

▲ 초과압류 금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 과다압류로 인한 체납자의 재산권침해 소지 제거.

▲ 납부기한의 지정기한 연장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연장기일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법인세 신고제출 서류 간소화

중소기업에 대해 제출서류 86종 가운데 44종 면제.

▲ 근로자소득세 면세점 및 소득공제한도 인상

면세점을 연간소득 1천1백57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의 전액공제범위는 연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총공제한도는 연 8백만원까지에서 9백만원까지로 각각 인상.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

고 공제한도로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기 조정

현재 12월분 급여 지급시점에서 다음해 1월분 급여 지급때로 변경.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제도 도입

연간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원천징수한뒤 연간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제도 신설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제조업, 광업, 도매업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 비과세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도 비과세.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주식으로서 투자대상업체가 부도난 경우 액면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비용처리.

▲상속세법 개정

과세구간 및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50억 이하 40%, 50억 초과 45% 등 5단계로 조정.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지분공제로 통일해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하고 배우자 증여공제는 5년간 5억원을 허용. 기초공제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복잡한 물적공제제도는 폐지. 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한도내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실시하고 상속 및 증여후의 재난에 의한 손실비용도 공제. 자녀공제는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미성년자 공제(20세까지)는 1년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

▲혼인 및 효도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혼인 및 합가일로부터 1년내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조건의 계산기준일을 혼인 및 합가일에서 양도일로 완화. 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추계결정시 건설비 상당액 공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 단 90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정해 이날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이날 기준시가를 적용.

▲농어민 지원

영농·영어·양축·임업 상속에 대해서는 2억원을 추가 공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자녀수 제한을 폐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한해서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증여세 면제만료기한을 당초 96년말에서 98년말까지로 연장.

▲장애인 지원

장애인 상속공제를 1년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금 융〉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3월부터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경영개선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인가취소(해산)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에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현금차관 대상 확대

민자유치 1종 시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중 순공사비 5천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당 연 5천만달러, 순공사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현금차관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

▲상업차관 대상 확대

대기업(첨단 시설재 도입용, 외채 상환용)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시설재 도입용) 등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 허용.

▲예금자 보호제도 시행

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은행법 개정 시행

대주주의 5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추천 20%로 비상임이사회가 구성되고 임원의 임기가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 3년, 비상임이사 중 주주대표 추천이사 1년,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 2년으로 변경.

▲대출상품 거래조건공시제 도입

가계자금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근거, 대출부대 비용, 대출금 상환기간 상환방법,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담보, 보증, 대출거래제한사항 및 자격,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공시.

▲ 신용카드 발급제한

2월부터 만 18세 미만이거나 대학생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

또 4월부터는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카드는 물론 다른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을 중지.

〈농 림〉

▲ 농림법령 전산화자료 인터넷 서비스 실시

농업관련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대법원판례 법령해설서 등 2천여건의 농림법령을 전산화해 3월부터 인터넷으로 서비스.

▲ 은퇴 고령농민에 대한 직접 지불제 시행

은퇴 농업인이 벼농사를 직접 지을 때의 농업소득과 임대후 임대소득간 차액의 80% 수준을 기준으로 3년분을 일시 지급. 97년 대상면적은 1만2천ha, 예산액은 3백10억원.

▲ 한국농업전문학교 개교

순수 정예 영농인력양성을 위한 선진국형 전문대학인 농업전문학교가 6개학과 2백40명 정원으로 3월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신축교사에서 개교.

▲ 농림업 세제지원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7월부터 전면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시한이 98년까지 연장.

▲ 쌀수매가격 예시제 및 약정수매제 시행

영농기 이전인 매년 2월중에 약정수매계획을 예시하고 농가배정량중 희망물량에 대해 출하약정을 체결. 약정체결때 약정금액의 40%를 선지급.

▲ 소포장 양곡판매 자유화

신고없이 자유판매가 가능한 소포장 양곡규모를 5kg 이하에서 20kg 이하까지 확대.

▲ 농산물품질관리원 개원

현행 농산물 등급검사위주의 국립농산물검사소를 품질관리 및 안정성 조사위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편,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성조사대상 농산물도 20개에서 50개 품목으로 확대.

▲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시행

유기농법으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품질표시를 의무화.

▲ 육류 구분판매제 시행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판매할 경우 부위별 등급별 품종별로 구분, 표시판매를 의무화.

〈환경〉

▲ 대기오염 기본신고제 도입

먼지 황산화물에 대해 대기 1·2종 및 특별대책지역안의 3종 사업장에 반기별로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신고.

▲ 연료사용 규제

저황중유 사용지역을 현재 42곳에서 6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0.1% 이하 저황경유 사용지역도 현재 60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

▲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 강화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한 공기과잉률 측정을 추가하고 주행상태에서 오염물질과다 배출차량의 선별률을 26%로 상향조정.

▲ 오존예보제 실시

서울 인천 등 광역시 이상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통계모델을 사용해 기상예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방송을 통해 하루전날 예보.

▲ 오존경보제 확대실시

7월부터 자동차통행량이 많은 광역시 이상 주요도시에서 오존경보제 실시.

▲ 수질오염 기본부과금제 도입

현행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 이외에 허용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폐수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부과금 부과.

▲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강화

7월부터 모든 지하수관정 개발은 규모에 관계없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지하수굴착업

등록제 실시와 개발실패공 및 폐공발생때 원상복구 의무화.

▲ 총인·총질소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전국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질소 60ppm, 총인 8ppm으로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대청호 낙동강유역의 1~4종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허용기준 적용.

▲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임진강 중·상류지역인 신천·포천천·영평천유역에 대해 납등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신규허가 금지.

▲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도입

7월부터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하천상류 및 소하천 인근 지역의 음식점 등에는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시행

섬유제품제조업 등 14개 업종 가운데 연간 2백t 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감량 의무화.

▲ 쓰레기소각시설 지원 강화

기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체계를 시설비의 30% 용자에서 30%의 국고보조로 변경.

▲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확대

7월부터 급식인원 1백인 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백m²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음식쓰레기 감량을 의무화하고 시장 백화점·호텔도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추가.

▲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제조·수입자에게 감량화 계획수립 및 추진 의무화.

▲ 건설폐재류 재활용촉진

7월부터 건설폐재류 재활용의무대상건설업체를 연간 시공금액 2백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자로 확대.

▲ 화학물질에 대한 관찰물질 지정제도 도입

단기간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화학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 그 물질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기간 관찰한 후 유독물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함.

▲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강화

7월부터 의약품·농약·화학류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은 화학물질중 해당

법에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유독물에 대해 관리기준을 강화.

〈과 학〉

▲ 원자력사업 추진체제조정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했던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로설계 핵연료제조사업등을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전연료로 이관.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신설

원자력연구개발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년도 원자력발전량(kW/h)당 1.2원을 징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처장관)를 신설해 원전 건설 및 운영허가 등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제고.

▲ 기술담보대출실시

무형의 기술력평가에 근거한 기술담보대출 실시. 금리는 연 1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

▲ 민간기상예보사업허용

다양한 기상정보서비스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적이고 특수한 기상에 대한 예보를 민간사업자가 수혜자부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특 허〉

▲ 특허·실용신안 이의신청제도 개선

등록공고후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 권리침해에 대한 벌금형 강화

특허권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리사시험제도 변경

제1차 시험 외국어선택과목에 러시아어 추가. 제2차 시험 필수과목에 민사소송법 추가.

▲ 韓·泰간 상호우선권 인정

한국 태국 양국은 출원한 특·실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인정.

〈증 권〉

▲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장된 87개사와 장외등록기업 2백69개사 가운데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소정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외국인만이 투자할 수 있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허용.

▲ 코스닥지수 도입

주식장외 시장에도 증권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십가총액 방식의 코스닥지수를 도입. 전체 등록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닥지수외에도 내년부터는 제조 유통 서비스 건설 금융등 5개업종별 지수가 주식장외시장에서 매일 발표.

▲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

4월부터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 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200조를 폐지.

▲ 공모주 청약예금 배정비율 축소

10월부터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60%에서 40%로 축소.

▲ 주식 홈트레이딩

개인투자자들이 집안에서 단말기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홈트레이딩 방식이 도입될 예정.

▲ 시세조종행위 금지대상 유가증권 범위 확대

4월부터 시세조종행위 금지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기존에는 상장 주식에 한정됐으나 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에까지 확대.

▲ PC통신 통한 공시제도 도입

증권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4월부터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PC통신을 통한 보고 및 전자 공시 제도 도입.

▲ 상장기업의 인수합병제도 개선

4월부터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던 공개매수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돼 증권거래소 시장 및 증권업협회의 주식장외시

장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50%+1주까지 매입도록 의무화.

▲ 주식매입선택권제도 도입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총 특별결의로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

▲ 시세조종 행위자 및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벌칙 강화

4월부터 시세조종행위자 및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벌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상장법인 감사제도 강화

4월부터 상장법인이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3% 이상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강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 이상 소수주주권 행사제도를 증권거래법에 도입해 상장법인의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비주주대상 상장법인 공모증자제도 도입

상장법인이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증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보험〉

▲ 보험 비가입자에 대한 대출 허용

보험사의 보험자금 대출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및 기업까지 확대.

▲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4월부터 각 보험사들이 내놓은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알려주고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인제도를 시행.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8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차량이 사고를 당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사망은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후유장해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

로 각각 상향 조정.

▲보험금 상속공제 폐지

보험금을 상속받는 경우 1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상속세가 공제됐으나 이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를 도입.

▲보험금 증여공제 폐지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취자가 다를 경우 만기보험금 수령시 5백만원을 공제해온 제도 폐지.

▲크로스 보더(국경간 거래)대상종목 확대

외국보험사에 들수 있는 보험상품에 현재의 항공수출입적하보험외에 생명 해외여행 장기상해 선박보험을 추가.

▲재보험거래 자유화

4월부터 재보험 국내우선출재제도 완전 폐지.

▲제3회 경험생명표 적용 및 이자율차배당 자유화

4월부터 보장성 보험료는 인하, 개인연금보험료는 인상.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4월부터 수출입적하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각종종합보험등 18개 종목의 가격요율시행 및 장기손해보험 예정위험률 자유화.

〈통 상〉

▲수출입 승인제 폐지

수출입승인제를 원칙적으로는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개편, 필요한 최소 품목에 대해서만 승인제 유지.

▲무역업 신고제로 전환

무역업 희망자는 무역협회에 신고만하면 무역업 가능.

▲산업설비 수출승인 임의규정으로 전환

산업설비를 수출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전환.

▲수입선다변화품목 축소

1백52개 품목중 25개를 줄인 1백27개만 운영.

▲정부조달시장 개방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24개국이 가입해 체결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제 공개경쟁입찰 실시.

▲ASEM컨벤션센터 건립기금 신설

당초 97년까지 징수키로 했던 무역진흥기금을 조기 폐지하는 대신 ASEM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으로 내수용 수입때 수입액의 0.14%를 9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일본상사에 수입업 개방

한국에 진출한 9개 일본종합상사들은 그동안 수출업만 영위해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회사와 수입계약을 맺고 제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

〈자 원〉

▲등유·경유 특소세 및 교통세 인상

등유와 경유에 ① 당 각각 8원씩의 특소세와 교통세를 추가로 부과. 여기에 교육세 15%와 부가세 10%가 가산될 경우 이들 유가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② 당 10원씩 인상될 전망.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제 폐지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유가가 자유화됨에 따라 폐지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석유 수출입 및 수출입제도 개선

신고제였던 석유 수출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주유소)도 등록제로 전환.

▲민간석유 비축제도

민간의 석유비축 한도량을 3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석유비축 대행업을 신설.

▲가스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가스안전공사가 액화석유가스(LPG)만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징수해 왔으나 97년부터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LPG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안전부담금을 징수.

▲석유수입부담금 확대

부과대상을 LPG에서 LNG까지 확대.

▲체적판매제 실시

LPG공급사용을 중량단위(kg)로 거래하던 것을 체적단위(m^3)로 변경.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과학기술처가 주관하던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통상산업부로 이관.

▲전원개발 계획 승인절차

시·도지사의 의견을 먼저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토록 개선.

〈산 업〉

▲아파트형 공장 분양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던 것을 조성원가로 분양, 임대.

▲공단관리비 징수제 폐지

분양가의 2%를 징수했으나 폐지.

▲소규모공장 등록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2백 m^3 미만에서 5백 m^3 미만으로 확대.

▲국가공단조직 개편

5개 국가산업단지를 단일조직으로 통폐합.

▲기술담보 시범사업 실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담보화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하도록 제한적으로 시범사업 실시.

▲테크노파크 조성

대학 연구소에 기업이 입주해 공동으로 연구개발 창업보육 시험생산등을 할 수 있는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산업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실시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가운데 통산부령 1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

기구를 개편하고 진흥원 사업범위에 진흥사업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가.

▲승강기 관리기관 및 범률 일원화

승강기 가운데 일반용은 통산부, 산업용은 노동부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통산부에서 일괄 관리도록 일원화.

▲ 품질보증체제(ISO 9000) 인증제도 개편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를 민간주도로 운영, 인증 및 연수기관 지정, 인증심사원의 등록 및 사후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

▲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

철망제조업등 1백35개 품목 가운데 47개를 해제.

〈공정거래〉

▲ 신문업 고시 제정 및 시행

신문업자의 경품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2개월을 초과해서 공짜로 신문을 투입하는 행위와 구독자 동의없이 신문을 강제로 투입하는 행위를 규제.

▲ 상가 분양·임대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시행

건설회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지정한 입점업종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부당광고로 규제.

▲ 금융상품표시광고 공정거래 지침 시행

이자율과 이자산정방법, 예금과 관련된 부수적 혜택등에 관한 부당 표시광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

▲ 환경 관련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

3월부터 「무공해」「재활용」「생분해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자본금 50억원 자산규모 2백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했던 것을 4월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 또 금융기관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대상에 포함.

▲ 기업결합 신고대상 주식 소유비율 인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할 경우 신고토록 하던 것을 상장사의 경우 15% 이상만 취득해도 신고토록 개정.

▲ 기업결합을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진출규제

대기업이 기업 결합을 통해 중소업종에 진출할 경우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규제.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축소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돼 있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가 채무보증한도를 98년 3월 말 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토록 개정.

▲재벌그룹 계열분리 촉진

내년 4월부터 계열분리 기준을 완화, 재벌 친족간 계열분리를 촉진.

▲부당 인력스카우트 규제강화

납품업체나 대리점 등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의 부당 인력스카우트만 규제해 왔으나 거래관계가 없는 경쟁 사업자로부터의 부당인력 스카우트도 규제.

〈보건·복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

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향상. 거액보호자의 경우 1인당 월 10만7천원에서 13만3천원, 시설보호자는 9만2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인상지급. 생보 자동 출산여성 7천7백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해산보호비 신규지원. 자녀 학비지원범위가 중학교와 실업계고교전체, 인문계고교 성적 상위 30%에서 전체 중·고교생으로 확대.

▲의사상자 보호수준향상

의사상자 보호법이 4월부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보상금을 월 최저임금 액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조정, 1인당 최고 보상금 3천8백만원에서 7천6백만원으로 인상.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시점이 의사상자 보호결정때에서 의사상 행위 시점으로 변경.

▲장애인 복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단가는 정신지체의 경우 1인당 3만2천원에서 4만원, 기타 장애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이 1, 2급 중증·중복장애인에서 1급 전원과 2급 자활보호대상자로 확대. 자립자금 대출액을 가구당 1천2백만원으로 2백만 원 증액.

▲노인복지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낮춰지고 수당은 3만~5만원에서 3만5천~5만원으로 인상.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전문병원 6개와 치매요양시설 16개도 증설.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방문사업소 35개 설치.

▲부녀복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인당 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 생업자금융자액은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 미혼모 특수치료비 15만4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국고지원 성폭력피해자상담소 8개 증설.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증액. 여성회관 5개 신축.

▲의료보험급여확대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의 요양급여기간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30일 연장.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돋보기 망원경),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인공후두 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적용.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 시범실시(정상분만 제왕절개술 편도선수술 백내장수술)

〈내 무〉

▲인감증명법 개정

인감대리 신고때 필요한 보증인 2명의 거주범위가 지금까지는 본인과 같은 읍·면·동으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민방위기본법 개정

긴급조치를 실효성을 위해 영업제한, 시설개선·이전 등 조치명령권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부여되며 적의 침공 또는 침공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동원불용자와 명령불복종자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

▲지방양여금법 개정(주세양여율 인상)

주세양여율이 현행 80%에서 1백%로 오르며 추가확보되는 재원은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지방재정 보전수요에 충당.

〈경찰〉

▲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 전면 실시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도로축소형태의 연결식으로 바뀌며 경찰청지정 전문학원에서도 가능. 기능시험 합격뒤 연습면허(1·2종 보통)를 따면 3km 이내의 실제 도로구간에서 주행시험 실시.

▲ 오토매틱 운전면허 발급

면허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이 보급돼 오토차량으로도 면허시험 가능. 합격자에겐 오토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발급.

▲ 파출소 3교대제 전면 실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파출소의 근무 형태가 현행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변경.

▲ 국제운전면허증 절차 완화

국제운전면허증 교부때 비자사본 항공권 등 국외출국예정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국외여행자가 아니라도 희망 운전자는 누구나 1년 유효의 국제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법무〉

▲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

▲ 체포영장제

긴급구속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 체포적부심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사람은 법원에 체포적부심 신청가능.

▲ 보호관찰 적용확대

종래 소년법에만 적용하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도를 성인법에도 확대 적용.

▲ 기소전 보석제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가능.

▲보석보증금 현금납부

보증보험제도만으로 운용되던 보석금 납부방법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대부분 현금납부로 변경. 재력이 없는 피고인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이용가능.

〈행정·공무원〉

▲국기게양

관공서 등에는 연중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고 생활용품·학용품·사무용품 등에 태극문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민원처리기구통합

정부합동민원실이 폐지돼 국민고충처리위와 통합.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횟수가 통산 4회로 제한되고 선발인원이 6백명으로 증가. 또 시험과목은 기존의 16과목에서 문화사·국사·국민윤리 등이 폐지돼 13개 과목으로 감소.

▲행정·외무고시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의 1차시험이 통합실시되고 해외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외무고시 2부가 신설.

▲여성·장애인 채용확대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율이 10%에서 13%로, 장애인 고용이 2%에서 3%로 확대.

〈교통〉

▲농어촌버스 운임결정권 시·도지사 위임

농어촌버스의 운임결정권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서울 지하철 5호선 전구간 개통

여의도~왕십리구간이 개통돼 5호선 전구간(방화동~상일동역) 운행.

▲택시운전사 양벌제도 폐지

운전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운전사에게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에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을 물려왔으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과징금 면제. 그동안 과징금을 운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운전자들은 이중 처벌을 받아왔음.

▲ 도로소통정보 음성서비스실시

국도 및 고속도로의 구간별 소통정보를 3월부터 음성으로 제공.

▲ 자동차 리콜기준 강화

리콜대상기준을 안전기준 부적합차량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까지 확대.

▲ 자동차성능시험 항목확대

자동차 성능시험 항목에 원동기 출력시험 등 6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의 35개 항목에서 41개 항목으로 확대.

▲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7월부터 대형 승합차에 첨단제동장치인 ABS장착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후부반사체 설치 의무.

▲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사업용 노후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정기점검제도 폐지.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일정 차령(택시 3년, 승합 4년, 화물·특수 5년)이 지나면 1년마다 한번씩 정기 점검.

▲ 자동차 애프터서비스기간 연장

5월부터 부상수리기간을 자동차판매일 이후 1년(2만km)에서 2년(4만km)으로 연장.

〈교 육〉

▲ 초등학교 영어교육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 수업시간에 학습. 성적평가는 실시되지 않으며 간단한 어휘나 대화를 학습.

▲ 학점은행제 실시

평가인정을 받은 각종 교육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더라도 학점이 인정되며 이것이 누적돼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학위도 수여.

▲ 전문학사 학위수여

전문대 졸업자에게도 「전문학사(Associate Degree)」라는 명칭의 학위 수여.

▲기술대학제도 도입

산업체근로자가 산업체장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학 제도를 도입.

▲산업체 위탁교육자격 완화

「10인 이상 산업체 1년6개월 이상 근무증인자」로 돼 있는 산업체 위탁생자격이 「5인 이상 산업체 총 경력 1년6개월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에 대한 사설학원 전면개방

투자제한 조건없이 외국인의 전문학원 및 일반학원 설립·등록이 개방돼 내국인과 같이 학원 운영을 허용.

▲초·중등교 첨단화사업

초·중·고교에 근거리통신망(LAN)이 구축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고 교사들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보급.

〈해양수산〉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국유국영이었던 부두운영제도가 국유민영 부두로 전환, 부두운영회사가 하역등을 일괄 운영하고 부두이용료를 징수.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

항만건설사업의 범위가 확대돼 화물유통시설 배후연결도로 등도 항만건설사업에 포함되며 25개 법률의 행정 인·허가를 간소화.

▲도선사법 개정안 시행

현재의 도선사 단일면허제가 1종 및 2종으로 구분되며 면허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

▲선박폐유수용시설 설치운영

선박폐유를 방제, 청소업자가 수거토록 하던 것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수거토록 전환.

▲지정화물 대상품목 축소

국적선이용을 우선해야 했던 지정화물 대상품목 중 원유 비료원료 곡물류 석유화학공업 원료는 자유화.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확대

항망 구역내 해상교통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VTS시스템을 9월 인천·대산항에, 11월 부산·마산항에 설치.

▲ 영어자금 확대공급 및 운영제도 개선

영어자금의 공급규모가 9천5백억원으로 늘어나고 영어자금을 1년씩 2회 연장가능.

▲ 수산세제 개선

어업인의 상속세 기초공제액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나고 양어용 배합사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

▲ 수산물 정비비축제도 시행

지정 중도매인을 통한 수매를 수협이 직접 수매하게 되며 조기 갈치 등에 대한 수매물량을 당일 상장물량의 30% 이내에서 제한.

▲ 수산물 수출입제도 개선

수산물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는 대신 조정관세 부과품목에 냉동홍어 새우젓 등이 포함되며 수출제한 승인품목에서 뱀장어 건굴등은 제외.

▲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경감

어선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1백만원 이하에서 선박 t 수별로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로 인하.

▲ 어선검사수수료 개선

검사집행지 이외에서 어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던 출장경비 폐지.

〈정보통신〉

▲ 114 유료전화

내년 1월부터 114 안내전화가 1통화당 80원으로 유료화. 한달에 3통화 까지는 무료. 주화사용 공중전화의 경우 카드식으로 교체될때까지 40원을 넣으면 114 안내 이용가능. 시외지역의 114 안내를 받을 경우 전국 어디든지 80원.

▲ 전파사용료 인하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를 분기당 1만2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하. 전파사용료 납부면제 하한액도 현행 1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상향조정.

▲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개정 시행

2월중 개정법이 발효되면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시 사전공고방식 폐지. 사업자의 이용약관도 요금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신고원칙으로 전환.

▲ 통신위원회 사무국 설치

통신위원회 위상강화의 일환으로 2월초 사무국을 설치,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둘 예정.

▲ 이동전화등 무선국허가제도 개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할 경우 무선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정기검사와 재허가 면제. 이동전화가입자가 5년마다 납부해야하는 정기검사료 1만9천원과 재허가료 1만5천원 면제. 10만명에 달하는 91년도 가입자에 우선 혜택.

▲ 무선기기 검정제도, 등록제로 전환

무선기기 형식검정대상(29종) 중 인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13종에 대해 3월중 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 이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같이 인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무선기기 제조업자는 민간지정 시험기관에서 등록증만 받으면 되고 정통부의 전파연구소에 형식검정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시외전화 식별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9월부터 사전에 전화국에 신청해 놓으면 시외전화를 걸때 테이콤의 082와 같은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음. 그렇지 않으면 한국통신의 시외전화를 이용할 때도 081 식별번호를 눌러야함.

▲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

정보통신 산업체가 요구하는 프로젝트수행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자통신연구소 부설로 설립.

〈노 동〉

▲ 노조의 정치활동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삭제로 정치활동 가능.

▲ 조합비 상한 폐지

임금의 2% 상한제 폐지.

▲조정전치제 도입

노동위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쟁의행위 허용.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제도 도입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치 않는 사업주에 발동.

▲대체근로

쟁의기간중 동일 사업내 대체근로와 신규 하도급 허용. 사업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유니언숍사업장은 사외 대체근로도 가능.

▲직권증대 가능

공익사업중 의료 수도 전기 가스 유류공급 통신 은행 철도 지하철 버스등 업종에만 직권 중재 가능.

▲최저 취업연령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 2년으로 통일.

▲정리해고

계속되는 경영악화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위 승인을 거쳐 정리해고 가능.

▲변형근로 가능

노사간 서면합의 전제로 1개월 단위, 주56시간 변형근로 가능.

▲신근로관행

자유출퇴근제 재량근로제 인정근로제등 신근로관행 도입.

▲신퇴직금제 도입

중간 정산제 기업연금제등 새로운 퇴직금제 도입.

▲연차휴가

상한 30일로 제한.

▲교섭대표의 협약체결권 인정과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금지**▲노사협력 우수기업 지원**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해 금융·세제등 혜택을 부여.

▲공인노무사제 보완

공인노무사 시험을 연1회 이상(현재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개업 노무사의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

▲ 산업기계·기구 안전인증제 도입

산업용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정부기관이 검증.

▲ 작업중지 근로자보호

급박한 산재위험 발생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 표준안전관리비제 확대

적용 대상을 현재 건설업에서 조선업까지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자 처벌강화

최고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 강화

보육시설설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연리 3~3.5%로 최고 3억원까지 시설자금을 융자.

▲ 실업자 재고용 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

▲ 여성 재고용 장려금

결혼 출산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내 재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

▲ 고용조정지원제 적용 확대

현재 유리제조등 5개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 실업급여 지급대상 축소

60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경우라도 65세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 국제노동재단 설립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노무관리지원 등을 담당할 국제노동재단을 설립.

〈병무·국방〉

▲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단축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혼역병과 동일하게 26개월로 단축하고 지원

제를 폐지, 징집제로 단일화.

▲ 군필자 국외여행신고제 폐지

30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친자와 면제자(제2 국민역)의 국외여행 때 거주지 읍·면·동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출국당일 공항·항만의 병무청 신고사무소에서 출국확인만 받으면 됨.

▲ 단순 신체결함자 합격 판정

병역의 형평성을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신체결함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확대

대학 또는 대학원 편·입학자, 일반휴학 등 학적변동자는 입영연기가 제한됐으나 제한연령내 졸업이 가능할 경우 계속 입영이 연기됨.

▲ 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완화

보충역(공익근무대상)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해지고 복무기간도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28개월로 단축.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 완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징·소집된 경우도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주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기면 복무기간에 합산.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임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도 가능.

▲ 전문연구요원 편입절차 개선

전문연구요원 편입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와 같이 지방병무청에 직접 출원.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훈연금 인상

기본연금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되고 1급 중상인자에 대한 간호수당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부가연금은 보훈대상별로 월 9천원에서 1백52만원까지 지금.

▲ 보훈가족,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자금, 생업대부한도 인상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포함)대부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인상. 아파트분양은 전용 면적 18평 이하땐 1천2백만원, 25.7평 이하는 8백만원으로 인상.

▲ 참전용사 진료비감면 확대

현행 30%이던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비율을 7월부터는 50%로 확대.

▲ 동원훈련 미지정자 하사관·병 향토방위훈련 실시

제대 7년차 이내 하사관과 1~4년차 병출신 동원훈련 미지정자에 대해 향토방위훈련이 2회 추가되며 동원 미참훈련은 3일로 하루 축소.

▲ 예비군 보충교육제도 개선

예비군 보충교육 2차례 무단불참할 경우 2~16시간 추가되던 추가훈련이 없어지는 대신 고발조치.

▲ 예비군훈련 중식비 지급대상 확대

예비군훈련 중식비를 동원미참 훈련참가자는 물론 일반훈련 참가자에게도 지급. 금액도 하루 1천5백원씩으로 증액.

▲ 동원대상지역내 수용·사용된 토지환매

동원대상지역내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토지중 군사상 필요 없게된 토지 약 80만평을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 또는 수의매각 가능.

▲ 군비행장 민항기 운항확대

원주 청주비행장의 제주·부산행 민항기 신규취항 허용. 하루 원주~부산간 2편, 원주~제주간 1편, 청주~부산간 2편, 청주~제주간 5편 새로 운항.

▲ 군사보호시설 업무제도 개선

민통선 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로 축소. 민통선 북방지역도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에 기존 주택의 증·개축과 농기계보관창고, 해안 양식장등 농·어업시설 허용.

〈서 울 시〉

▲ 당산철교 철거

1월 1일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돼 지하철 2호선 순환운행이 중단되며 당산역~합정역~홍대입구역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양화대교 구교(강남방향) 상판철거

4월 1일부터 4개 차선중 하류쪽 1개 차선을 통제한 가운데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

▲ 성수대교 개통

상반기중 개통을 목표로 하고 공정이 진행중.

▲ 도시고속도로 개통

용비교~반포대교(4월중), 성산대교 IC(6월중),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10월중), 수서IC ~올림픽대로(12월)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

▲여의도공원 녹지조성

4월중 여의도광장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분수대 등이 설치된 잔디공원으로 조성.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급

1월부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3만원씩 목욕 및 이·미용비를 통장에 입금해 지급.

▲노인 교통수당 확대지급

지금까지 분기별로 지급했던 토큰 36장분(1만4천4백원)을 60장(2만4천원)으로 확대.

▲서울 「패션페어」

9월중 서울형 산업으로 패션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션쇼 전시회 등 행사를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개최.